

<p>하게 되어 實費補償條例의 必要性이 擧頭됨.</p> <p>나. 訴請審查委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第13條는 公務員의 懲戒 其他 그意思에 反하는 不利益處分에 對한 訴請을 審查決定하기 為하여 任用權者別로 地方公務員 訴請審查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고, ○ 法 第14條 第1項에 審查委員會는 委員 7人으로 構成하며, 同條 第2項에 委員은, <p style="margin-left: 2em;">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있는 者</p> <p style="margin-left: 2em;">2. 大學에서 法律學을 擔當하는 副教授以上의 職에 있는 者</p> <p style="margin-left: 2em;">3. 所屬局長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市長이 任命 또는 委嘱도록 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에게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1966. 6. 8 條例 第442號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가 制定되어 施行中에 있었음. <p>다. 改正條例(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改正條例案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人事委員에 對하여는 法 第7條 第4項에서, 訴請審查委員에 對하여는 法 第14條 第3項에서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이를 單一의 條例로 統合하고자 먼저 條例의 名稱부터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에서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 및 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로 하고, 人事委員과 訴請審查委員의 實費辨償等規定하고자 改正提案된 것임. ○ 法 第7條 第4項과 法 第14條 第3項은 實費補償을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으나, 改正條例(案) 第1條는 “實費辨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하여 法上 用語와 差異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补償은 損害의 填補時財產上의 損失을 补充하기 為하여 交付되는 金額의 意味로, 补償은 財產上金錢上의 損失을 물어주는 意味로 會計關係에 使用되나 條例 運用上에는 別差가 없는 것으로 思料되고, 	<p>한다”하여 法上 用語와 差異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补償은 損害의 填補時財產上의 損失을 补充하기 為하여 交付되는 金額의 意味로, 补償은 財產上金錢上의 損失을 물어주는 意味로 會計關係에 使用되나 條例 運用上에는 別差가 없는 것으로 思料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上 實費를 补償도록 되어 있으나 改正條例(案) 第2條는 日費로 規定하였는 바, 생각컨대 日費는 日當의 뜻으로 實費는 實際所要費用의 뜻으로 생각되나, 각 委員마다 委員會參席實費를 計算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日費로 規定한 것이 理解가 되며, ○ 또한 日費의 基準이 없이 “豫算의範圍內에서 日費를 支給한다”로 되어 있어 漠然한 点이 없지 않으나, 大部分의 委員會(자랑스런市民賞 功績審查委, 公職者倫理委員會)가 類似한 規定을 두고 있는 点과 現實面에서 諸般物價水準反映과 弹力性 있게 條例를 運用하기 為하여 不可避한 것으로 思料됨. ○ 參考로 訴請審查委員의 豫算上 日費는 '93年度에 1回 3만원에서 '94年度에는 5만원으로 計上되었음. ○ 委員이 公務旅行時 第3條의 旅費基準을 보면은 2級公務員에相當하는 旅費를 支給하도록 規定하였는 바, 委員의 身分이 法官, 檢事, 辯護士, 大學校副教授職에 있는 者 等임을 勘案할 때 妥當하다고 思料됨. <p style="text-align: center;">.....</p> <p>다음으로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報告)</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委員會 回附 <p style="margin-left: 2em;">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特別市長(94.3.11)</p> <p style="margin-left: 2em;">나. 回附日字 : 94.3.12</p> <p style="margin-left: 2em;">다. 上程日字 : 第69回 臨時會 第1次 内務委員會(94.3.24)</p>
--	--

<p>2. 提案説明의 要旨</p> <p>가. 提案理由</p> <p>서울의 새로운 跳躍을 期約하는 서울 600年 等 市政發展의 分岐點이거나 歷史的 記念性이 높은 主要行事・事業 및 事件 等에 市民과 公務員의 關心과 參與를 擴散하고 時代의 史蹟으로 오랫동안 保存하기 為하여 主要行事・事業・事件의 象徵을 時宜適切하게 市長 表彰狀 等에 活用하려는 것임.</p> <p>나. 主要骨子</p> <p>現行 條例에 規定된 市長 表彰狀(賞狀・感謝狀 包含)의 書式을 市長이 따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함 (案 第8條)</p> <p>다. 參考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係法令 : 地方公務員法 ○ 豫算措置 : 別途措置 必要敘음 ○ 合意 : 意見 없음 ○ 其他事項 : 新・舊條文 對比表 別添 <p>3. 檢討意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公務員法 第79條는 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表彰을 行할 수 있고, 서울特別市表彰條例(條例第454號 66.10.6)는 서울特別市에서 行하는 表彰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 ○ 同條例 第8條 第1項은 “表彰狀・賞狀 및 感謝狀은 別紙 制1號 乃至 第4號 書式에 依한다”고 規定하여 表彰狀・賞狀・感謝狀의 書式을 條例에 規定하고 있는 바, ○ 이번에 이를 改正하여 “表彰狀・賞狀 및 感謝狀의 書式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로 改正하여 歷史的 記念性이 높은 主要行事나 事業 및 事件 等의 象徵을 時宜適切하게 表彰狀 等에 反映하고자 提案된 것으로 ○ 어떤 書式이나 樣式 等은 條例에 規定하기 보다는 規則 等에 委任하는 것이 事案의 性格에도 맞고, 社會나 行政與件의 變化에 適應하기가 보다 容易하고 	<p>行政의 弾力性을 確保하는 側面에서도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바, 規則에 委任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市長이 따로 定”하도록 改正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思料됨.</p> <p>.....</p> <p>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p> <p>이어서 一括上程된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内務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십시오.</p> <p>그리면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면 一括上程된 案件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終結하겠습니다.</p> <p>이어서 一括上程된 案件에 대하여 각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照)</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비용변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p>
---	---